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09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백혜련 · 박희승 · 이광재
이수진 · 진선미 · 윤후덕
남인순 · 김교홍 · 신정훈
김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에 관한 내용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에 대한 위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그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

조, 제8조 및 제10조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어린이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 등) ①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한 날부터 2개월 이후에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한 날부터 2개월 이후에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해당 사업자가 그 이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어린이제품 수거등 계획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현황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도 결함제품으로 인한 위해가 적절히 제거되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

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u>할 수 있다</u> .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 ----- ----- ----- <u>하여야</u> <u>한다</u> . ----- ----- -----.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u>공표할 수 있다</u> .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 ----- ----- <u>공표하여야</u> <u>한다</u>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u>공표할 수 있다</u> .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 ----- ----- ----- ----- ----- <u>공표하여야 한다</u>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어린이제품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 등) ①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어

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또

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산업

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어린이제품 수거등 계획서

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한 날부터 2개월 이후에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자

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

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한 날부터 2개월 이후에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자

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

황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

입·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

제14조(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생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의 결과 해당 사업자가 그 이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어린이제품 수거등 계획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이행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이행현황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도 결함제품으로 인한 위해가 적절히 제거되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안전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6조의2(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3억원 이

제43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제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u><신 설></u> 2. ~ 25. (생 략) ④ (생 략)	<u>공하지 아니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u> 2.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